

●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〔1978. 9. 20〕 [대통령령제9162호]

개정 1991. 9. 7. 대통령령제13463호(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)
1996. 7. 31. 대통령령제15133호(영해법중개정법률의시행일에관한규정)

제1조 (목적)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96.7.31>

제2조 (직선기선의 기점)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 1과 같다.

제3조 (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)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별표 2에 게기하는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.

제4조 (외국군함동의 통항)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그 통항 3일전까지(공휴일은 제외한다) 외무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전기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동 수역에 공해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당해선박의 선명·종류 및 번호
2. 통항목적
3. 통항항로 및 일정

제5조 (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) ①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·제11호 또는 제13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·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1. 당해선박의 선명·종류 및 번호
2. 활동목적
3. 활동수역·항로 및 일정

②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당국의 허가·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·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.

제 6 조 (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) 법 제 5조제 2항제 9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 물질의 배출규제기준에 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 제 5조 · 제11조 · 제14조제 1항 및 제16조제 1항 ·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다. <개정 91·9·7>

제 7 조 (무해통항의 일시정지) ①법 제 5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 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,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국방부장관이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수역 ·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영은 197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법령의 정비) 대통령령 제8994호 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중 제 2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 <91·9·7>

제 1조 (시행일)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내지 제 5조 생략

부 칙 <96·7·31>

①(시행일) 이 영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생략

(별표 1)

직선을 기준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

수 역	기점	지 명	경 위 도
영일만	1.	달 만 갑	북위 36도 06분 05초 동경 129도 26분 06초
	2.	장 기 갑	북위 36도 05분 19초 동경 129도 33분 36초
울산만	3.	화 암 추	북위 35도 28분 13초 동경 129도 24분 39초
	4.	법 월 갑	북위 35도 25분 45초 동경 129도 22분 16초
남해안	5.	1.5 미 이 터 암	북위 35도 09분 59초 동경 129도 13분 12초
	6.	생 도 (남 단)	북위 35도 02분 01초 동경 129도 05분 43초
	7.	홍 도	북위 34도 31분 52초 동경 128도 44분 11초
	8.	간 여 암	북위 34도 17분 04초 동경 127도 51분 25초
	9.	상 백 도	북위 34도 01분 38초 동경 127도 36분 48초
	10.	거 문 도	북위 34도 00분 0초 동경 127도 19분 35초
	11.	여 서 도	북위 33도 57분 56초 동경 126도 55분 39초
	12.	장 수 도	북위 33도 54분 55초 동경 126도 38분 25초
	13.	절 명 서	북위 33도 51분 54초 동경 126도 18분 54초
	14.	소 흑 산 도	북위 34도 02분 40초 동경 125도 07분 34초
	15.	소 국 흘 도 (소흑산도 북서방)	북위 34도 06분 51초 동경 125도 04분 42초
	16.	홍 도	북위 34도 40분 18초 동경 125도 10분 25초

	17.	고서(홍도북서방)	북위 34도 43분 03초 동경 125도 11분 25초
	18.	횡 도	북위 35도 20분 03초 동경 125도 59분 14초
	19.	상 왕 등 도	북위 35도 39분 30초 동경 126도 06분 16초
	20.	직 도	북위 35도 53분 10초 동경 126도 04분 15초
	21.	어 청 도	북위 36도 07분 05초 동경 125도 58분 11초
	22.	서 격 열 비 도	북위 36도 36분 36초 동경 125도 32분 30초
	23.	소 령 도	북위 36도 58분 38초 동경 125도 45분 02초

[별표 2]

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외측한계

1.	별표 1에 계기한 기점중 기점 5(1.5미터암)와 기점 6(생도) 및 기점 7(홍도)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3 해리의 선
2.	별표 1에 계기한 기점중 기점 5(1.5미터암)에서 127도로 그은 선과 제1호에 계기한 선의 교점으로부터 93도로 그은 선이 12해리선과 교차하는 점까지의 선
3.	별표 1에 계기한 기점중 기점 7(홍도)에서 120도로 그은 선과 제1호에 계기한 선의 교점으로부터 172도로 그은 선이 12해리선과 교차하는 점까지의 선

●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〔^{1978.4.29}
대통령령 제8994호〕

개정 1978. 9. 20. 대통령령 제9162호(영해법시행령)

제 1 조 (영해법의 시행일) 법률 제3037호 영해법은 197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삭제 <78·9·20>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78·9·20>

①(시행일) 이 영은 197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②생략

(별 표) 삭제 <78·9·20>